

2013년도

공 직 윤 리 연 차 보 고 서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2013년도

공직윤리 연차보고서

본 보고서는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2012년도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 실적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직자재산등록 및 심사,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현황, 주식백지신탁제도 등입니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목 차

제 1 장 공직윤리제도 운영

1. 공직윤리제도 운영개요	
가. 공직자윤리법 도입취지	1
나. 그간의 제도운영 상황	1
2.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가. 구성원칙	3
나. 위원현황	4
다. 기 능	5
라. 운영방법	5
마. 운영현황	5

제 2 장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및 심사

1. 공직자 재산등록 개요	
가. 재산등록의무자	6
나. 등록대상 친족 및 고지거부	6
다. 등록대상재산의 종류 및 가액 산정방법	9
2.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가. 최초 재산등록	10
나. 정기 재산변동신고	10
다. 의무면제자 재산변동신고	10
라. 재등록의무자 재산변동신고	11
마. 퇴직자 재산변동신고	11
바. 2012년 재산등록의무자 현황	11
3. 등록재산의 공개	
가. 재산공개대상자	11
나. 재산공개 시기 및 방법	12
다. 2012년 재산공개 현황	12

4. 재산등록사항의 열람·복사	13
5. 등록재산의 심사	
가. 심사관할	13
나. 심사내용·방법 및 절차	14
다. 2012년 등록재산의 심사결과	15

제 3 장 선물신고 등

1. 선물신고	
가. 개 요	17
나. 운영 방법	17
다. 2012년 실적	18
2.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가. 개 요	18
나. 운영 방법	19
다. 2012년 실적	19
3. 주식백지신탁제도	
가. 개 요	20
나. 운영 방법	20
다. 2012년 실적	21

제 1 장 공직윤리제도 운영

1. 공직윤리제도 운영개요

가. 공직자윤리법 도입취지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재산등록과 등록재산의 공개, 공직을 이용한 재산 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제도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81. 12. 31.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983. 1. 1. 부터 본격 시행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여러 차례 제도의 보완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나. 그간의 제도운영 현황

공직윤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고위공직자의 등록재산 공개제도에 따라 공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내역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그간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직윤리 확립을 위하여 추진한 공직윤리제도의 주요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

고위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05.11.19.부터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사익 간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있다.

※ 백지신탁이란(Blind Trust) : 신탁자가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 권한의 일체를 수탁기관에 위임하고 자신의 재산이 어떠한 형태인지 알 수 없도록(Blind) 하는 것

2)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사전심사제도 도입

매년 취업제한 대상업체 임의취업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취업제한업체에 취업하려는 퇴직공직자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공직자윤리위원회 사전심사제 도입으로 영리사기업체와의 유착 소지를 사전 차단하고 있다.

3)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 개선

공직윤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산등록·심사제도를 개선하였다.

< 주요내용 >

- 부동산 등 주요재산의 ‘가액변동신고제’ 도입을 통한 공직자 보유재산 투명관리
- 공개대상자에 대한 ‘재산형성과정 소명제도’ 및 ‘고지거부사전허가제’ 도입을 통한 심사강화
- ‘계층적 심사제’ 도입을 통한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 제고(2008년부터 적용)
 - 지자체 고위공직자 및 지방의회 의원에게 대한 심사권 상향 조정
 - ※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의원, 지자체 3급이상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
 - 시군구의원, 시군4급 공직자 :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

4) 재산등록과 심사업무의 전산화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을 구축하여 2008년부터 전면 시행함으로써 재산형성과정 심사기반 구축 및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재산등록으로 재산등록의무자들의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5)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사전제공

매년 말 기준 정기변동 재산신고 시에 재산등록의무자와 친족의 부동산과 금융거래 정보를 본인의 동의에 따라 사전제공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도는 2012년도에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를 사전에 조회하여 의무자에게 제공하였다.

6) 퇴직공직자 행위제한제도 도입

퇴직 후 공·사의 충돌상황의 사전 방지를 위해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독, 조세 부과 등 일정업무에 대해 퇴직 후 영구히 취급 금지하도록 하였다.

개정 변호사법상 수임제한과의 형평에 맞춰 장·차관, 1급이상, 자치단체장, 도, 시군의원 등 재산공개자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중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는 퇴직 후 1년간 취급 금지하도록 하였다.

특히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재산공개자는 퇴직공직자가 관여한 사건·사무 등 업무 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소속 사기업체 등의 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2.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가. 구성원칙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7명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4명은 경기도의회 의원 2명과 도 공무원 2명으로 위촉이나 임명한다. 위원장·부위원장 선임과 심의 절차 등은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고 있다.

※ 2012. 3. 5. 조례 개정으로 당초 9명의 위원에서 11명의 위원으로 확대

나. 위원현황

(2012. 12월말 기준)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	비 고
위원장	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현)수원지법 제3형사부 재판장 ·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부위원장	오병열	경기도의회 도의원	· 현)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 위원 · 도의회 윤리특별위 위원 · 남양주 교육발전협의회 위원	
위원	최재우	경기도의회 도의원	· 현)도의회 기획위원회 위원 · 민주통합당 경기도당 ·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이○○	경기중앙지방법원 변 호 사	· 현)수원지방법원 조정위원 · 경기중앙지방법원 총무이사	
위원	이○○	경기중앙지방법원 변 호 사	· 현)법무법인 시민 소속변호사	
위원	현○○	국립한경대 교 수	· 현)한경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 한경대 인문사회과학대학장 · 한국고전연구학회 회장	
위원	최○○	경기중앙지방법원 변 호 사	· 현)수원지법 조정위원 · 수원지법 국선변호인	
위원	채○○	가천대학교 교 수	· 현)가천대 교육대학원 부교수 · 평생교육진흥원 평가위원	
위원	윤○○	단국대학교 교 수	· 현)단국대 사범대 부교수 · 전주대 사범대 부교수	
위원 (당연직)	오후석	경 기 도 기획조정실장	· 경기도 경제투자실장	
위원 (당연직)	이을죽	경 기 도 여성가족국장	· 인재개발원장	
간 사	류흥수	경 기 도 조사담당관	·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	

다. 기 능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심사결과의 처리
- 금융자료 조취대상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 또는 제출요구 승인
- 취업제한대상자의 유관 영리사기업체에의 취업승인
- 기타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라. 운영 방법

○ 회 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 의결정족수

일반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요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주요사항 예시

- 허위등록 또는 직무상 비밀이용 재산증식 혐의자 조사의뢰 또는 그 승인
- 심사결과 처리(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허위등록사실의 신문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 등)
- 법 위반자에 대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또는 고발

마. 운영 현황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2년도에 총 3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2012년도에 개최된 각 회의별 주요 심의·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회 수	일 자	회 의 내 용	비 고
제1회	2012. 5. 25.(금)	○ 의결사항 -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선임 - 2012년도 재산조회 및 심사처리기준 결정	
제2회	2012. 9. 14.(금)	○ 의결사항 - 2012년도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결정	
제3회	2012. 11.15.(목)	○ 의결사항 - 임의취업자에 대한 취업제한여부 심사결정	

제 2 장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및 심사

1. 공직자 재산등록 개요

가. 재산등록의무자

공직자윤리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4급이상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이사·감사이상의 상근임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추가하여 공직자윤리법시행령에서는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부서, 세무·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부서등의 7급 이상 공무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7급 이상 재산등록 대상부서 및 공직유관단체】

경기도 (14개 부서)	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세정과, 기후대기과, 환경안전관리과, 북부환경관리사업단, 도로계획과, 팔당수질개선본부(수질관리과, 상하수과), 건설본부(도로건설과, 북부도로과, 건축시설과, 하천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공직유관단체 (24개 기관)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체육회, 경기중기센터, 경기농림진흥재단, 킨텍스, 경기도의료원,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영어마을,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생활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평생교육진흥원

나. 등록대상 친족 및 고지거부

- 1) 재산등록대상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출가한 여자는 제외
- 2) 고지거부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기 재산의 고지를 거부하고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제도이다.
(법 제12조제4항)

고지거부 허가요건은 아래와 같다.

① 피부양자가 아닌 자 일 것(영 제27조의2제1항)

- 피부양자란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는 직계존비속을 말함

②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것(영 제27조의2제2항)

- 직계존속의 경우 : 나이, 취업 등 직업 유무, 보유재산의 정도 및 취업·사업 또는 재산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¹⁾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영 제27조의2제1항 1호)
- 직계비속의 경우 : 나이,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 구성 여부, 취업 등 직업 유무, 취업 등의 기간 및 취업·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영 제27조의2제1항 2호)

※ 2012년 독립생계 월 소득기준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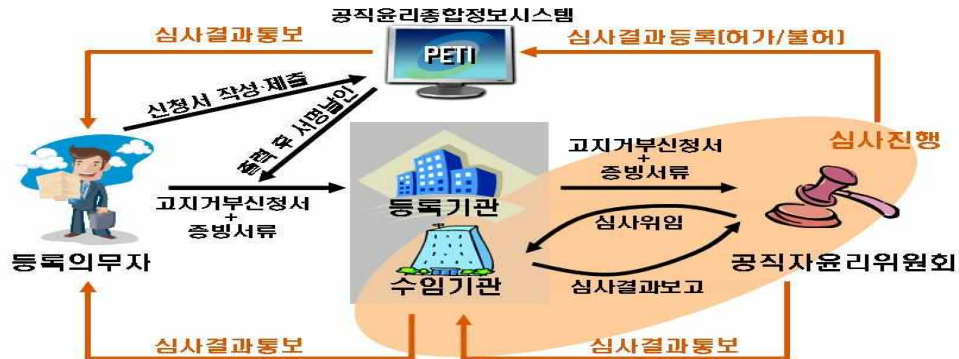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독립생계 소득기준 (최저생계비의 150%)	830	1,413	1,828	2,243	2,658	3,073	3,488
농촌지역 독립생계소득 (독립생계소득의 73%)	605	1,031	1,334	1,637	1,940	2,243	2,546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553	942	1,218	1,495	1,772	2,048	2,325

※ 소득액은 세금 공제 전 총소득을 기준,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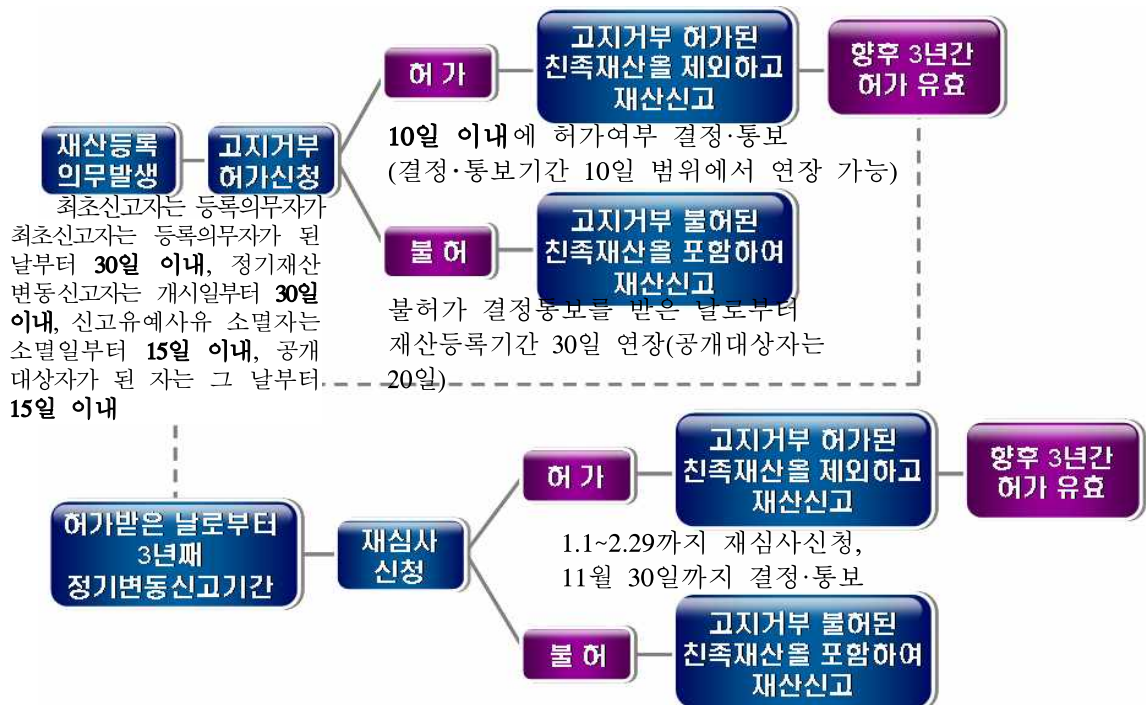
고지거부하고자 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명자료를 첨부한 고지거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3년 주기로 재심사 신청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기적인 소득의 판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라 공표한 최저생계비, 가족 수, 거주 지역, 물가수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영 제27조의2 제3항)

〈고지거부 허가(재심사) 업무 흐름도〉



〈고지거부 허가(재심사) 신청절차〉



다. 등록대상재산의 종류 및 가액 산정방법

구 분	종 류	가 액 산 정 방 법
부 동 산	• 토지의 소유권 • 건물의 소유권 • 토지·건물의 지상권·전세권(임차권 포함)	- 개별공시지가(국토해양부, 시·군·구) - 아파트·연립, 빌라 등 공동주택: 공동주택 가격(국토해양부) - 주택: 개별주택가격(국토해양부, 시·군·구) - 상가 및 기타건물: 개별공시지가(대지)+지방세과세 시가표준액(건물)* 취득가액병기 - 계약금액 또는 취득가액
부 동 산 에 관한 규정이 준용 되는 권리등	• 광업권·어업권 • 선박·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등의 소유권 및 저당권	- 실거래가격이나 감가상각 등을 감안한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 그리고 그 종류·제작연도·제작회사·등록번호 등 명세
동 산	•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원 이상의 현금(수표)·예금·채권·채무 •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원 이상의 국채·공채·회사채·주식등 유가증권 •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출자지분	- 해당 금액 - 액면가액 다만, 증권거래소 상장주식 및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주식은 등록기준일의 최종가격 - 출자금액 및 지분비율, 그 회사 최근사업년도의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 회사내역을 표시
	•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백금(제품포함) • 품목당 500만원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 • 권당 500만원이상의 회원권 • 소유자별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무체 재산권	- 실거래가격이나 신고일 현재의 시장가격 그리고 그 종류·함량과 중량 -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 그리고 종류·크기·색상 등 명세 -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 그 종류·크기·작가 및 제작연대 등 명세 - 취득(매도)가액. 다만, 골프회원권은 기준시가(국세청) 또는 실거래가액 - 종류·내용·존속기간 등 권리의 명세·연간 소득금액 및 소득원인행위
기 타	•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 출연재산 내역, 보유직위·비영리법인의 명칭·소재지·대표자·목적사업 등 명세표시

2.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재산등록의무자는 최초재산등록을 하고 공직자로 재직하는 동안 매년말기준 정기적으로 재산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신분 변동이나 퇴직한 때에도 재산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한편 재산등록 의무자가 외국 파견, 휴직, 재외공관이나 해외주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 신고유예제도가 있다.

재산신고 방법은 인터넷시스템인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본인이 직접 접속하여 공인인증서(행정이나 은행)로 인증을 받고 재산사항을 입력하게 되며 증명서류의 제출없이 인터넷으로 완료되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재산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가. 최초 재산등록

임용, 승진, 전보 등 처음으로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공직자는 신분변동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 전체를 2개월 이내, 재산을 공개하는 직위로 승진·전보된 공직자는 신분변동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 전체를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정기 재산변동신고

이전 재산신고 후 전년도 12. 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신고하는 것으로서 전년도 12. 31. 현재 재직 중인 재산등록의무자는 모두 신고대상이 된다.

다만, 전년도 12월중의 최초재산등록자와 해당연도 1~2월중 퇴직이나 면제자가 된 경우에는 해당신고로 갈음한다.

다. 의무면제자 재산변동신고

재산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의무자가 아닌 직위로 신분이 변동된(전보 등) 경우에 최근신고(최초등록 또는 정기변동신고) 이후 신분 변동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의무면제자 재산변동신고는 1년 후에 한 번 더 재산변동신고를 함으로 재산등록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즉 의무면제자가 되어 총 2회의 재산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라. 재등록의무자 재산변동신고

재산등록의무자로 재산등록을 하다가 퇴직·전보·강임 등으로 재산등록 의무를 면제받은 대상자가 3년(퇴직의 경우 1년) 이내에 다시 재산등록 의무자가 된 경우에 이전 재산신고 이후 재등록의무자가 된 날까지의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마. 퇴직자 재산변동신고

재산등록의무자로서 퇴직한 사람은 최종신고 이후 퇴직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퇴직자는 재직 시 사용하던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일반 전자서명인증서를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다시 등록하고 재산 신고를 하여야 한다.

바. 2012년 재산등록의무자 현황

2011. 12. 31. 현재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의 재산등록의무자는 총 4,150명으로 그 중 공개대상자가 425명이며 비공개대상자는 3,725명이다.

3. 등록재산의 공개

가. 재산공개대상자

2011. 12. 31. 기준의 재산등록의무자 중 공개대상자는 총 581명으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156명(도지사 및 1·2부지사 3, 국제자문대사 3, 도의회 의원 119명, 시·군 단체장 31명)은 관보에,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425명(시·군 의원 414명, 공직유관단체장 11명)은 도보에 공개한다.

나. 재산공개 시기 및 방법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전년도 말 기준의 정기변동재산신고가 2월말까지이므로 3월초에는 공개자 개인별 공개목록을 작성하고, 공개자의 재산 증감 현황을 분석하여, 통상 3월 마지막 주에 공개하되 경기도홈페이지 경기도보에 게재하여 도민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수시공개도 같은 요령으로 공개한다.

다. 2012년 재산공개 현황

공고번호	공개일자	공개내역	비고
2012-1	12.3.9	○ 재산공개 공직자 수시 재산등록사항 공고 - 수시신고 대상자 2명 경기도보 공개	
2012-2	12.3.23	○ 재산공개 공직자 정기변동 재산등록(변동)사항 공고 - 정기변동 대상자 425명 경기도보 공개	
2012-3	12.5.11	○ 재산공개 공직자 수시 재산등록사항 공고 - 수시신고 대상자 1명 경기도보 공개	
2012-4	12.6.15	○ 재산공개 공직자 수시 재산등록사항 공고 - 수시신고 대상자 3명 경기도보 공개	
2012-5	12.6.29	○ 재산공개 공직자 수시 재산등록사항 공고 - 수시신고 대상자 1명 경기도보 공개	
2012-6	12.8.24	○ 재산공개 공직자 수시 재산등록사항 공고 - 수시신고 대상자 2명 경기도보 공개	
2012-7	12.11.30	○ 재산공개 공직자 수시 재산등록사항 공고 - 수시신고 대상자 1명 경기도보 공개	

4. 재산등록사항의 열람·복사

재산등록의무자는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등록된 사항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나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재산등록사항을 법에서 정한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재산등록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나 그 밖의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를 알렸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공직자 개인의 재산등록사항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열람·복사를 허가할 수 있는 경우로는(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4항)

- ①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범죄수사나 비위조사, 이에 관련된 재판상 필요할 때
- ②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조사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정활동으로서 특정 공직자의 구체적 비위사건 관련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나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소속공직자의 비위사건 관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 ④ 재산등록의무자나 재산등록의무자였던 사람이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하는 때로 한정하고 있다.

열람·복사의 허가권자는 본인 신청의 경우 재산등록기관의 장이며, 범죄수사, 비위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허가 할 수 있다.

5. 등록재산의 심사

가. 심사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의 심사권을 가지며, 허위등록이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재산등록의무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또한,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청)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한다.

나. 심사내용·방법 및 절차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의 등록재산을 엄정히 심사하기 위하여 재산등록의무자가 인터넷으로 신고한 내용의 적합성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심사자료(부동산정보,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여 등록사항의 사실 여부와 누락사항을 확인하는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다.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이 구축됨에 따라 재산등록신고는 인터넷으로 이루어져 재산등록의무자의 신고 편의를 도모하게 되었고 심사 관련 조회자료를 온라인으로 송·수신함으로써 업무처리시간 단축 및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1) 심사자료 조회

재산등록의무자와 재산등록친족의 명단을 작성하여 금융과 부동산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 조회요청을 하고 자료의 송수신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을 이용한다.

- 토지 : 국토해양부, 경기도
- 주택 : 국토해양부
- 비주거용 건물 등 : 국세청(상가, 회원권 등)
- 금융거래정보 : 187개 금융기관(예금, 보험, 채무 등)

2) 대조심사

위에서 조회요청한 심사자료가 회신되면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를 이용하여 일괄대조심사와 개별대조심사를 한다.

일괄대조심사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으로 신고내용과 심사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제외하고 불일치하는 것만 남기게 된다.

개별대조심사는 일괄대조심사에서 검색한 신고자료와 심사자료에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개인별로 대조심사를 실시한다. 이때 누락·과다의 정도가 경미하면(2천만원 이하) 다음 신고시 정정하는 조건으로 실무종결 처리하고, 누락·과다가 2천만원 이상인 사람에게는 이상자료와 재산증감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한다.

3) 소명심사 및 심사보고서 작성

소명서는 부동산과 금융재산의 누락·과다의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것으로 소명서와 증명자료를 검토해 보면 심사자료의 잘못이 있는 부당한 소명도 있게 되므로 소명심사를 통해서 다시한번 정상신고와 실무종결처리 대상자를 제외하고 불성실신고자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 상정한다.

4) 위원회 심의 결과 조치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2012. 5. 25.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 종결처리 : 누락금액이 2천만원 미만으로 조치의 실익이 없을 때
- 보완명령 : 누락금액이 2천~5천만원 미만일때
- 경고시정 : 누락금액이 5천만원~3억원 미만일때
- 법적조치 : 누락금액이 3억원 이상일때 징계요청, 과태료 부과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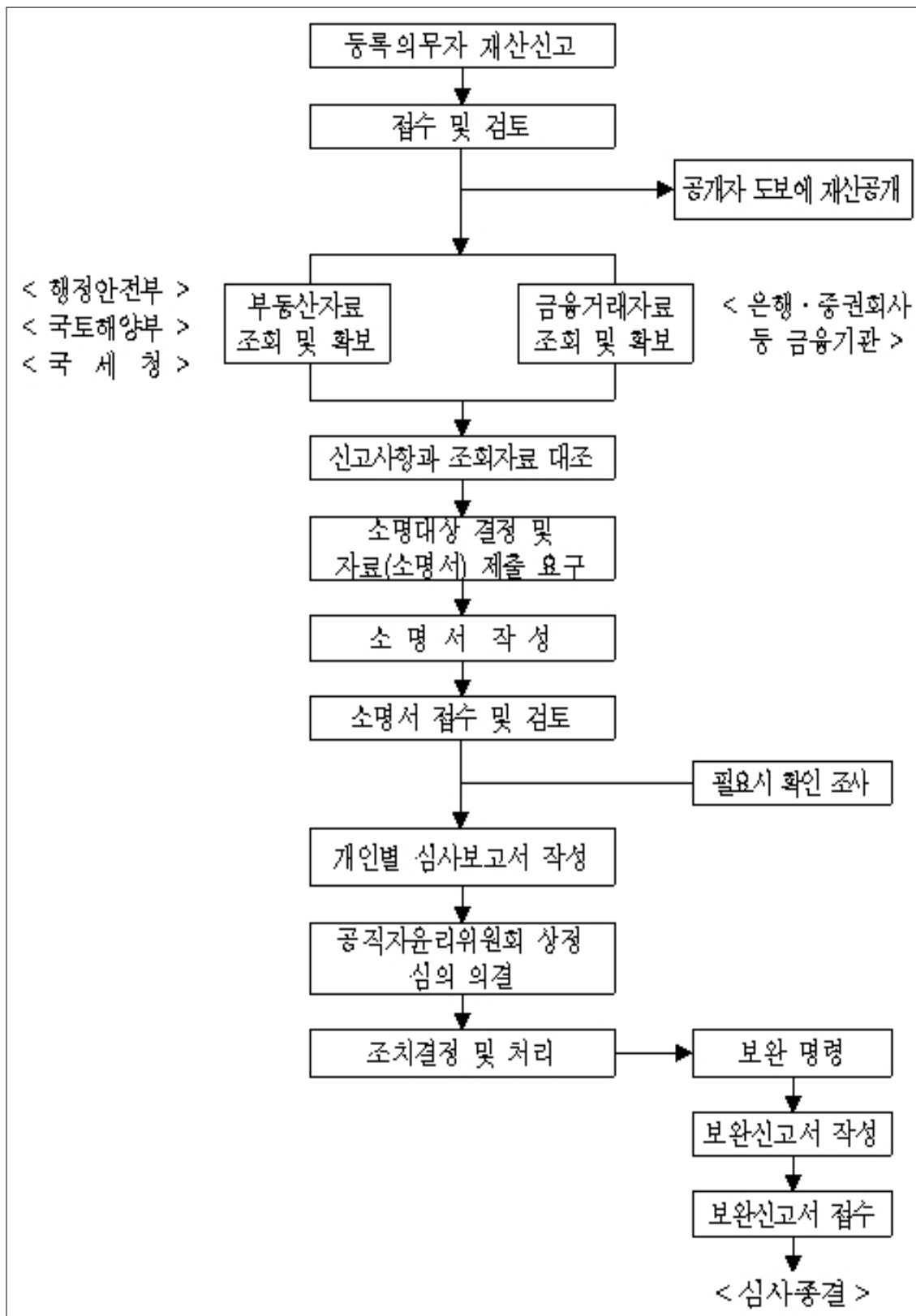
다. 2012년 등록재산의 심사결과

2012년도 등록재산의 대조심사 결과 195명의 불성실 신고자에게는 보완명령 이상의 조치를 하였다.

【2012년 등록재산의 심사결과】

(단위 : 명)

회의개최	재산 등록자	심사대상자 (공개자)	심 사 결 과				
			합계	해임 및 징계요청	과태료 부과	경고 및 시정조치	보완조치
2012. 9. 14.	4,150	3,327 (425)	195	-	3	30	162



【재산등록·공개·심사절차 흐름도】

제3장 선물신고 등

1. 선물신고

가. 개 요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에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에게 청렴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외국이나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의 선물은 외교관례상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공직자가 받은 일정가액 이상의 선물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된 선물은 국고에 귀속하는 것이 선물신고제도이다.

이 제도는 선물에 대한 처리와 유지·관리 등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아울러 공직의 품위를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나. 운영 방법

1) 선물신고 대상자

모든 공무원·지방의회의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가족이 해당된다.

2) 신고대상 선물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나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증정 국가의 시가로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시가로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신고한다.

3) 선물의 신고절차

선물을 받은 공직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여야 하며 소속기관·단체의 장은 30일 이내에 재산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4) 선물의 관리·유지 및 처분

선물을 이관 받은 재산등록기관의 장은 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있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선물은 재산관리 부서에 이관하고, 다른 기관에서 관리·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선물은 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선물 중 공유재산으로 계속 관리·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선물은 외교통상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달청장에게 이관하여 매각처분 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선물을 처분할 때에 해당 선물을 신고한 공직자가 그 선물의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우선하여 매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공매 절차에 따라 매각한다.

다. 2012년 실적

【2012년 공직자 선물신고 접수 및 관리현황】

접수현황		관리현황			보관장소
건	수량	보관	이관	매각	
16	16 (개 또는 세트)	16	-	-	경기도기록관

2.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가. 개 요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2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 제도는 공직자가 유관사기업체에의 취업 등을 목적으로 재직 중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있다.

나. 운영 방법

1) 취업제한 대상자

취업제한 대상자는 재산등록의무자이다.

2) 취업제한 대상 사기업체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12월중에 관보에 고시하며 취업제한 대상 사기업체 (영 제33조 제1항)는 아래와 같다.

- ①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 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 ②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 원 이상인 법무법인 등,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③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 원 이상인 세무법인

3) 취업제한여부 사전확인 및 취업승인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승인요청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개시 30일전까지 퇴직당시의 소속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요청인의 퇴직당시 소속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업무관련성을 검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나 취업승인요청서를 접수한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 당시 소속 기관장의 의견서, 사무분장과 담당업무, 근무 현황 등을 심사하여 취업제한여부 사전확인 및 취업승인을 할 수 있다.

다. 2012년 실적

1) 취업제한여부 사전확인 : 없음

2) 취업제한업체 취업승인 : 없음

3) 취업확인 일제점검 결과

2012 도 기준 3년간 재산등록 퇴직자의 취업여부를 일제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2012 취업제한대상 공직자 퇴직 및 취업현황】

(단위 : 건)

구분	퇴직현황				취업자 현황			취업제한업체 취업자 현황		
	계	3년전 퇴직자	2년전 퇴직자	직전년 퇴직자	계	취업 제한 업체	일반 업체	승인자	확인자	위반자
인원	467	251	107	109	99	1	99		1	

3. 주식백지신탁제도

가. 개 요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을 함으로써 사적이익과 공적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관련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토록 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나. 운영 방법

1) 주식백지신탁 대상자

재산공개대상자와 재산등록 친족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주식백지신탁 대상자이다.

2) 주식백지신탁 업무처리

○ 주식매각·백지신탁

보유주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1개월이내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을 재산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재산등록기관은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주식백지신탁대상자가 보유주식의 매각이나 백지신탁의무를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필요시 1개월의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해당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한다.

심사결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보유할 수 있으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을 재산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 2012년 실적

【2012년 직무관련성 심사청구결과 조치내역】

(기간 : 2012.1.1. ~ 2012.12.31. / 단위 : 명)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자	직무관련성 있음				직무관련성 없음
	구분	매각	백지신탁	미조치	
12	1개월 이내	-	-	-	12
	1개월 초과				

본 연차보고서에 수록한 내용 중 의문점이 있거나 보완할 사항
또는 상세히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경기도 조사담당관실 공직윤리팀
(☎ 031) 8008-297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2013 연차보고서

2013년 12월 일 발행

발행 : 경기도 조사담당관
(031-8008-2973)